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안

(김희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88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2월 05일

발 의 자 : 김희걸, 고병국, 김 경,  
김호평, 노식래, 문병훈,  
오중석, 이성배, 전석기  
의원(9명)

찬 성 자 : 권수정, 김재형, 박기열,  
박순규, 송아량, 이영실,  
황규복 의원(7명)

## 1. 제안이유

-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에 대한 입주민들의 일탈 행위 등으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권익 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 등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입주민들의 폭행과 협박 등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과 생명이 경시되고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설치하고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침해와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 ~ 제2조)
- 나.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시책 발굴, 근무환경 제공 등 시장의 책무와, 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제4조)
- 다. 근로환경 기본시설 설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 및 상담 지원 등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제6조)
- 라. 관리 종사자, 입주자, 주택관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관리 종사자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권리구제 신고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 ~ 제8조)
- 마. 관리사무소장 등 노동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공주택관리법」, 「경비업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서울특별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 종사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주택관리업자 등”이란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상담, 소송지원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6. “기본시설”이란 관리 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관리 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관리 종사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①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 종사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및 고용유지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2. 관리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체적 지원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관리 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관리 종사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 종사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구제 신고센터)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 종사자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권리구제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권리구제 신고센터’는 공동주택에서 관리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

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9조(관리사무소장 등 노동자의 임기) ① 법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안정성을 제고하고, 법 제65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장은 관리사무소장의 임기를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종사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체결 및 부당 해고 방지를 위한 표준근로계약서 또는 표준 취업규칙을 관리종사자를 고용하는 자에게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2021020500000006
------	------------------

##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김희걸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여차민 팀장 윤지민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02.05	
회신일 : 2021.02.05	내용문의 : 02-2180-7945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3조(시장의 책무), 제5조(지원의 범위),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8조(권리구제 신고센터)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3조(시장의 책무)제2항에 따른 관리 종사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비용은 구체적인 계획과 현황과약이 되어있지 않아 비용산정이 어려워 추계대상에서 제외
  - 안 제5조(지원의 범위)에 따른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예산 지원은 같은조 제2항에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지원규모 및 내용에 대한 비용 추계 곤란
  - 제8조(권리구제 신고센터)에 따른 권리구제 신고센터 설치비는 노동정책 담당관의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사업을 통해 권리구제 신고센터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추계 대상에서 제외(기 추진사업 내용 붙임 참고)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529,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은 5년 동안 529,000천원으로 연평균 105,8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2년부터 발생하고, 비용추계기간(2022~2026년) 이후에도 비용발생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은 2021년 노동정책담당관의 감정노동자 인식 실태조사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하며,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2021년 예산서 기준 노동정책담당관에서 추진 중인 ‘감정노동자 인식 실태조사’ 비용은 22,000천원임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에 따른 인권 교육 및 홍보비용은 2021년 복지정책실의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사업 중 인권교육 예산을 인권 교육 비용으로,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업 중 노동인식개선 홍보 예산을 홍보비용으로 준용하여 추계

※ 2021년 예산서 기준 복지정책실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사업의 ‘인권 교육’ 비용은 32,000천원이고, 노동민생정책관에서 추진 중인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업의 ‘노동인식개선 홍보’ 비용은 65,000천원임

- 불가상승률 미만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 ≙ 529,000천원(연평균 105,800천원)

- 총비용 = 실태조사 비용 + 인권 교육 및 홍보 비용  
 = 44,000천원 + 485,000천원  
 = 529,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비용 (안 제6조)	22,000	-	-	22,000	-	44,000
	인권 교육 및 홍보비용 (안 제7조)	97,000	97,000	97,000	97,000	97,000	485,000
	소계(b)	119,000	97,000	97,000	119,000	97,000	529,000
□ 총 비용(b-a)		119,000	97,000	97,000	119,000	97,000	529,000

○ 실태조사 비용 ≙ 44,000천원

- 실태조사 비용 = 22,000천원 × 2회  
 = 44,000천원

○ 인권 교육 및 홍보비용 ≙ 485,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인권교육 및 홍보비)<sub>i</sub>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 인권 교육 및 홍보비용  
 = 97,000천원

※ 2021년 예산서 기준 복지정책실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사업의 ‘인권 교육’ 비용(32,000천원)을 인권 교육비로 준용하고, 노동민생정책관에서 추진 중인 노동 존중문화 확산 사업의 ‘노동인식개선 홍보’ 비용(65,000천원)을 홍보비용으로 추계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분석관(주무관)      윤지민

☎ 02-2180-7945

e-mail : yjm1030@seoul.go.kr

[붙임] 동 조례안 관련 서울시 기 추진사업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주관 부서)	2021년 예산	사업 내용	관련 조항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3,829,9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협력사업</li> <li>·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노동자조직화 지원사업 등</li> <li>- 법률지원사업</li> <li>·상시 노동상담</li> <li>·노동자 권리구제 지원</li> <li>·청소년 노동권 보호 법률 지원 등</li> <li>- 교육홍보사업</li> <li>·노동아카데미, 노동존중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등</li> <li>- 정책연구 사업, 쉼터운영사업, 운영지원사업 등</li> <li>- 권리구제 신고센터</li> </ul>	제8조(권리구제 신고센터)

자료 : 2021년 서울시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및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 방안 대책(주택건축본부, 2020.6.)